보도자료

2013. 3. 18.

담당부서 : 사법지원실

담 당 자 : 조웅 심의관

공보관실 : ☎ 3480-1368



대법원 주최

가계부채 관련 도산 심포지엄

1. 심포지엄 개요

- 대법원은 2013. 3. 18.(월) 14:00~17:4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가계 부채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 였음
-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국 법원의 <u>개인회생·파산 담당 법관</u>을 비롯하여 법무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u>학계</u>, 법조, 주요은행,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음

2. 심포지엄 개최 배경, 의의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황으로 하우스 푸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가계부채 역시 1,000조원에 이르러 국가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운용하는 법원도 재판실무를 개선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에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산법적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u>법적 채무조정제도를 운용하는 법원과 사적 워크</u> 아웃제도를 주선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가계부채의 해법을 찾기 위하여

<u>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가운데 지혜를 공유</u>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임

3. 주요 논의 결과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u>하우스 푸어 문제의 대책으로 개인회생 채무자의</u> <u>주거비, 즉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을 생계비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 지급하도록</u> 하는 방안과 이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생계비 중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되는 주거비, 교육비 등의 항목을 조정하고, 소득 수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생계비를 실질화・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 또한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인회생기 간 동안 담보권의 실행을 유예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는 주택담보 채권자(금융기관)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약정을 주선하는 한편, 신용회 복위원회의 상담 이후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파탄상태에 처한 채무자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이들을 소송 구조기관(법원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함으로 써,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보장하고, 법원은 신용회 복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신속 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조기갱생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하였음
- 나아가 개인회생·파산채무자의 실질적 재건을 위한 미래설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또는 개인파산·면책결정 이후 채무자를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4. 향후 계획

■ 법원은 2012년 9월 개최된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에서 생계비 실질화

의 필요성에 대해 법관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고, <u>이번 심포지</u> 엄에서 논의된 사항을 최종 검토하여 상반기 중에 재판실무에 직접 반영 할 예정임

■ <u>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에</u> 실무진 협의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갈 예정임

■ 배경, 의의

-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황으로 하우스 푸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가계부채 역시 1,000조원에 이르러 국가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운용하는 법원도 재판실무를 개선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에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산법적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
- □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법적 채무조정제도를 운용하는 법원과 사적 워크아웃 제도를 주선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가계부채의 해법을 찾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가운데 지혜를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행사 개요

1. 명칭

□ 「가계부채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심포지엄」

2. 일시, 장소

- □ 2013년 3월 18일(월) 14:00~17:40
- □ 대법원 1601호

3. 논의 주제

- □ 제1주제: 가계부채 문제와 개인회생 · 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 □ 제2주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응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절차와의 연계방안

4. 주최: 대법원 법원행정처

5. 참가자: 약 70명

- □ 법원 내부: 법원행정처장, 차장, 사법지원실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 장판사, 전국 법원의 파산부장판사 및 개인회생·파산 담당 판사 등 약 30 명
- □ 법원 외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한국도산법학회장, 법무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 학계, 법조, 주요은행, 언론, 시 민단체 등 약 40명

6. 세부일정

진 행 내 용	시 간
등 록	13:30~14:00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4:00-14:05
인사말씀 : 법원행정처장	14:05~14:10
제1주제 : 가계부채 문제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사 회 -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 정준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 (30분) ・지정토론 - 박용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10분) 강상묵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10분) 박재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10분)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10분)	14:10~15:20 (70분)
휴 식	15:20~15:40 (20분)
제2주제 :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응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절차와의 연계방안	
・사 회 -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 남명섭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20분) ・지정토론 - 김수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서기관(10분) 이강현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장(10분) 이상진 기업은행 경서지역본부장(10분)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10분)	15:40~16:40 (60분)
휴식	16:40~17:00 (20분)

■ 논의 사항

- 1. 채무자의 용이한 절차접근 보장 및 신속한 절차진행으로 인한 조기 갱생 도모
- □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제도 활용을 통한 개인회생·파산절차 Fast Track 유용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자의 방문
- 상담 및 필터링(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 개인회생·파산 사유 조사 및 재산·소득의 검증(검증자료 구비)
- 의견서(신용상담보고서)
- 채무자에 적합한 소송구조기관 등으로 안내(또는 소송구조기관이 신용 상담기관에 와서 소송구조서비스 제공 및 수임)

소송구조기관

소송구조지정변호사 법률구조공단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관된 자료 검토 및 확인
-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기타 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개인회생/개인파산)

1

개인회생

• 회생위원의 신속한 조사보고

- -신청서 검토
- -신용회복위원회의 의견서 검토 -신청서 검토 및 활용
- -재산·소득 자료 검토
- 법원의 신속한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시 추가조사
- 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인가
- 신용회복위원회에 통보

개인파산

- 파산선고 및 관재인 선임
- 관재인의 신속한 조사보고
- -신용회복위원회의 의견서 검토 및 활용
- -재산·소득 자료 검토
- -채권자 이의시 추가조사
- 채권자집회 및 면책결정
- 신용회복위원회에 통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자에 대한 인가(개인회생), 면책(개인파산) 후 신용상담사의 상담서 비스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변제계획이행 등 신용회복 노력
-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까지 받았으나,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 운 채무자의 적극적인 구제가 주된 목적

- 소송구조 등 법률구조제도와 연계: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내용을 포함한 일 체의 자료를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법률구조공단에 인계
-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거친, 파탄상태에 직면한 채무자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상담 단계에서 이용이 가능한 제도(개인회생, 개인파산)를 적극 안내하여 소송구조기관에 인계함으로써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에 대한 용이한접근을 보장, 채무자의 적극적인 갱생 도모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가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 등에 상응하는 수준임을 전제로, 이미 1차 상담을 거친 채무자에게 유사한 절차 의 반복을 강요하는 것보다 조사된 결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채무자의 신 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
- 서울중앙지방법원부터 시범실시 후 성과분석 → 전면 확대 여부 결정

□ 새로운 개인파산제도의 확대 및 안정적 정착

- 원칙적 파산관재인 선임, 예외적 동시폐지: 파산절차비용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파산관재인 보수비용을 비교적 소액인 30만원으로 낮추어 이를 납부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절차 진행 (기초생활수급자 등 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 소명하면 동시폐지)
- 파산선고 전 단계에서 법원의 보정명령, 심문 등의 절차가 생략되고, 예납 금이 납부되면 즉시 파산선고를 하므로, 신속한 파산선고 가능
- 파산선고 후 파산 및 면책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파산관재인을 통한 신속 한 재산 및 소득 조사로 성실한 채무의 신속한 면책 가능
- 파산관재인의 조사결과에 따라 은닉재산 발견 시, 그 환가 및 배당 후 재량
 면책 여부의 탄력적인 고려 가능 → 채권자에게는 파산절차를 통한 채권회수, 채무자에게는 탄력적 재량면책을 통한 갱생 도모
- 2012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부터 전면 실시한 이래 광주, 대구, 전주, 춘천, 대전, 부산, 인천지방법원 등으로 확대

2. 하우스 푸어 문제를 위한 해법 마련

□ 기본개념

	개념	해결방안	당사자
담보권	개인회생기간(3~5년) 동안 주택담	- <u>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간의</u>	
실행	보채권의 원금 및 이미 발생한 이	<u>협약 개정</u> 을 통하여 담보권 실행	신용회복위원회
유예	자상환유예(담보권 실행 유예)	유예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금융기관
이자율	기존 이자 감면을 포함한 이자율	-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의 자율	채무자
감면	감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u>적 약정</u> 으로 해결	
	새롭게 발생하는 이자는 합리적인		
생계비	범위 내에서 주거비용으로 생계비	- <u>법원의 실무운영</u>	HÌ OÌ
반영	에 반영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	- <u>생계비 현실화</u> 필요	법원
	원		

□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한 주택담보채권의 담보권 실행 유예 및 이자 율 갂면

채무자 주택담보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1 • 금지명령 • 회생위원의 보고(현행 업무수행결과보고 아님) 법원 • 사건을 담보채무조정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에 회부(또는 신용회복위 원회의 사전 담보채무조정 후 개인회생신청 방식도 상정 가능) 1 •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검증 • 부동산가격 조사 및 적정한 이자율 산정 · 사전에 법원이 신복위와 협의하여 생계비로 반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적정한 이자율 기준 제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신용회복위원회 · 부동산가격 조사결과에 따라 담보가치 부족액만큼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변 제하고, 나머지 채권(원금 및 연체이자)은 유예 • 신용회복위원회-해당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채무자와 원금상환유예 등 약정 • 회생위원의 신속한 조사보고 법원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인가 1 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상담, 신용회복 노력

- 법원은 채무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자율적인 원금상환유예 등 약정이 성립하

는 것을 전제로, 주택담보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실무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계비에 반영하여 지원 → 생계비를 실질화 · 현실화하여 법리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실무를 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부터 시범실시 후 성과분석 → 전면 확대 여부 결정

3. 회생기간 동안 인간다운 생활 보장 = 생계비 현실화 방안

□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생계비

- 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 예외: 특별한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
- 현행 가구별 생계비 인정범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2년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u>1,495,550</u>	1,772,227	2,048,903
150% 2012년	830,031	1,413,296	1,828,310	2,243,325	2,658,341	3,073,355
2013년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150% 2013년	858,252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 현행 생계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최저생계비는 가구별 (특히 성별, 연령 등 인적구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단일액으로 채무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기 곤란
- 소득 수준에 따른 기존의 소비성향이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은 도외시한 채 형식적 평등만을 강조한 결과라는 지 적 가능
- 현행 실무는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여 추가 생계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고, 4인 가구 생계비 중 주거비는 355,362원(2012년 기준), 교육비는 105,834 원(2012년 기준)에 불과하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소득 수준, 가구별·지역별 사정에 따라 세분화된 생계비 인정기준을 마련·적용하고 있고,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이자비용 등 주거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개선방안

생계비 실질화, 현실화

Û

소득 수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다른 기준 적용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되는 주거비, 교육비 등 항목 조정

· · · · · ·

★ <u>회생기간 동안 인간다운 생활 보장</u>

★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u>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탄력성을 잃지 않을</u> 필요

★ 채권자의 이익과 조화될 필요

- 현행 생계비를 다소 상향하거나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주거비를 세분화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 인정하는 방안 논의
- 주거비 인정기준 (예시)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 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 울특별시는 제외 한다)	광역시(「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 역에 포함된 지 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 시, 용인시, 김포 시 및 광주시	그 밖의 지역
1인 가구	소득의 3.0%	소득의 2.4%	소득의 1.7%	소득의 1.4%
2인 가구	소득의 6.0%	소득의 4.8%	소득의 3.3%	소득의 2.7%
3인 가구	소득의 8.5%	소득의 6.8%	소득의 4.7%	소득의 3.8%
4인 가구 이상	소득의 10.0%	소득의 8.0%	소득의 5.5%	소득의 4.5%

4. 가계경제의 실질적 재건을 위한 미래설계 보장

-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개인파산·면책결정 후 채무자 상담을 통한 미래설 계 보장 -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기능 활용: 채무자를 신용회복위원회로 인계하여 신용상담사의 실질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끝)